

제 1483 호
1990. 4.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권한소요조례 3
 불용품관리권한소요조례 4

● 조 례

제2599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조례 5
 제2600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 5
 제2601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 5
 제2602호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 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95 호 관인재교부및신조	6
제 201 호 제2중전기공사사업영정지처분	7
● 구 고 시	
제 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강동구)	7
제 1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성동구)	8
제 4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중랑구)	9
● 구 공 고	
제 50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공람 (동작구)	9
● 사업소공고	
제 4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	10
● 사업소고시	
제 8 호 하천점용허가	12
● 사 령	

공 문 시 행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세경01754-

731-6256

'90. 4. 9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제114조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하니 회당부서에서는 '90.4.30까지 소요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일내 관리전환 요청이 없으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음.

가. 소요조회 대상물품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가격) 장부가격 (천원)	취득 년월일	상태	회계명	물품 소재지	사 용 용 도
3610-237	전자 복사기	미타 A2 DRY	대	1	3,231	'83. 2.14	폐품	일반	세경과	지적도복사용
4140-001	선풍기	금성 FD354	"	1	26	'81. 12.31 이전	"	"	"	
7110-001	소형 금고	수제	"	1	12	"	중고	"	"	
7110-002	캐비넷	3×6	각	1	15	"	폐품	"	"	
7430-001	타자기	마라톤	대	1	110	"	중고	"	"	
"	"	FACIT	"	1	150	"	"	"	"	

끝.

서울특별시장

받는곳: 산하 전기관.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국지01754-135

731-6236

'90. 4.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과에서 보유중인 아래물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제114조에 의거 관리전환료자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회망부서에서는 '90.4.30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때에는 소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

○ 소요조회물품 명세서

연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장부가액	취 득 년월일	상 태	회제명
1	3610-237	전자복사기	롯데Np 120RE	대	1	2,464,000	'85.3	사용가능 (요청비품)	일반
2	5835-011	녹 음 기	SONY Tc-120A	"	1	150,000	'73.7	"	"
			SONY Tc-104	"	1	70,000	'73.7	"	"
			금성사 Tom-608	"	1	70,000	'73.7	"	"
			금성사 Tom-609	"	1	70,000	'73.7	"	"
3	6730-004	환 등 기 2'×2' (35mm)	CAROUSEL 750	"	1	200,000	'73.7	폐 품	"
			CAROUSEL 850H-K	"	1	200,000	'73.7	"	"
4	7110-004	탁 자	목재180 ×95×70	각	1	6,800	미상	"	"
			회의용 목재 95×70	"	1	8,000	미상	"	"
5	7110-005	의 자	철제책상용 3A종	"	4	46,000	'73.7	"	"
			철제	"	2	22,420	'73.7	"	"
6	7410-013	편 첩 기		대	1	15,000	'73.7	"	"
7	7730-025	카 세 트 라 디 오	CROWN	"	1	70,000	'73.7	"	"

끝.

서울특별시장
(국민운동지원과장전결)

수신처: 시산하전기관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4.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

◎서울특별시조례제2599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국민학교(북부)중 “서울상월국민 학교”란 다음에 “서울중원국민학교”란을, (강남)중 “서울원명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방현국민학교”란과 “서울포이국민학교”란을, (강동)중 “서울가동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한산국민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국민학교 (북부)

번호	명 칭	위 치
66	서울중원국민학교	노원구중계동499-35

국민학교 (강남)

번호	명 칭	위 치
43	서울방현국민학교	서초구방배동산81-1
44	서울포이국민학교	강남구포이동273

국민학교 (강동)

번호	명 칭	위 치
49	서울한산국민학교	강동구 둔촌동149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4.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

◎서울특별시조례제2600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관(4급)”으로 하고, 단서중 “지방사서관”을 “지방사서관(5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4.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

◎서울특별시조례제2601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육연구원에 서무과, 초등교육연구부, 중등교육연구부, 교육자료부, 교육상담부, 진로교육연구부부를 둔다.

제9조 제1항 중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 제2항중 "진로교육연구실"을 "교육상담지원실"로 한다.

4. 학생심리측정 (적성검사제외) 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진로교육연구부) ①진로교육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3. 진로지도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진로적성 연구에 관한 사항
6.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7. 지역 진로교육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동 연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연구부에 진로지도연구실, 직업지도연구실, 진로상담실을 두되 실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제2602호

서울특별시유료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은 통행요금을 면제한다.

제4조 제8호중 "경우"를 "차량"으로 하여 이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3인이상 승차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6인이상 승차한 사업용 소형승합자동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5호

관인재교부및신조교부공고



서울특별시 산하 "영등포구청장" 및 "마포구청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및 신조교부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0. 4. 7

서울특별시장

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90년 4월 10일
2. 관인재교부 및 신조교부 내역

	신	규	폐	기
인				
영				
공인명	영등포구청장외인 (건축물대장용:인중기용)		영등포구청장외인 (건축물대장용:인중기용)	

인 영	신	규
		

공인명 마포구청장인 (공덕제1동 중계민원사무용) 마포구청장인 (산곡동 중계민원사무용)

◎서울특별시공고제201호
제2종전기공사인업업정지처분공고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2종 전기공사업체에 대
 하여 영업정지 처분 하였기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0. 4.
 서울특별시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사항	사유
제1055	사원전입사	이철상	원효로2가3-6	영업정지1개월 '90. 4.23-'90. 5.22	전기공사업법제29조 제2항3호
제1109	삼성기업	박창순	용산구 문배동 14-2	"	"

구 고 시

◎강동구고시제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영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3.
 강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광장 전신 전화국 주택조합의1
 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동구 자양동 680-63
 광장 전신 전화국 주택조합
 조합장 최석영의1개 조합
 3. 사업시행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강동구 길동 165-2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3,152.9㎡
 다.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라. 규 모 : 8층-11층 1동 83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다. 연 면 적 : 9,436.22㎡
 4. 사업시행기간 : '90. 3 - '91. 3

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등급	유형	폭원(m)	연장(m)	기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78	강동 길동 165-8	강동 길동 617-4	-
변경	"	3	6	78	"	"	패지

첨부: 설계도서 생략

◎성동구고시제1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1. 서고시 제76호('87. 9.20) 및 건고시 제 768호('84. 1.24)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544-3~485-2, 마장동 456-1~456-2, 행당동 299-7~300-14번지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4.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 시행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규 모	사 업 기 간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하왕십리544-3 ~485-2간	도시계획사업(도 로), 하왕십리543 -330번지외1개소 도로개설공사	폭: 6m 연장: 170m	'90.4 -'91.12.31	성동구 자양동220-147 성동구청장
마장동 456-1 ~456-2간	"	폭: 6m 연장: 30m	"	"
행당동299-7 ~300-14간	도시계획사업(도 로), 행당동299- 300번지간 도로 확장 공사	폭: 8m 연장: 200m	"	"

나. 수용 또는 사용합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취의 권리명세서-별첨

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중랑구고시제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04-32의 3 필지에 대하여 중랑구 공고 제29호('90. 3. 9)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을 공람공고를 한바.
-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특독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3.

중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04번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시행

명칭: 상봉1동 304번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폭6 미터, 연장 50미터

라.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90. 12. 31한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304번지

2.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시행

명칭: 상봉1동 304번지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폭 6미터, 연장 50미터

4.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5. 사업 착공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90. 12. 31한

6. 인 가 번 호: 중랑구고시제46호('90. 4. 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재산)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9. 위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을 별첨 도면과 같이 인가함.

1990. 3.

중랑구청장

구 공 고

◎동작구공고제50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제772호('87. 11. 3)로 결정되고 동고시제3호('88. 2. 5)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2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이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0. 4.

동작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동작구 사당동 136-1의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 당초: 사당소빙센터		변경: 사당 프라자 다. 사업규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지면적	3,518	3,518		
건축면적	1,737.06	1,705.25		
연면적	10,287.8	14,794.31		
<p>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동작구 사당동 135-1 경유산업(주) 오준경</p> <p>다.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전: '90. 12. 31 변경후: '91. 12. 31</p> <p>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첨(생략)-동작구 도시정비과 비치</p> <p>사. 토지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생략-동작구 도시정비과 비치</p> <p>아. 위치도 및 평면도: 별첨(생략)</p> <p>자. 공람기간: 1990. 4-1990. 4 (14일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사업소공고 </div> <p>●서울시립대학교공고제4호</p> <p>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에 의거 등록하였기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립대학교총장</p> <p>1. 사용개시용: 1990. 4.</p> <p>2. 등록인명</p>		
인				
공인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정수관인	서울대학교 장학기금채권관리인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경리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운용관인
인				
공인명	서울시립대학교장학기금 채무관리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지출원인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출납원인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인 영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징수관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인 영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채권관리관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인 영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관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인 영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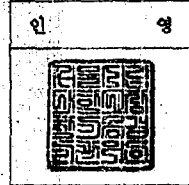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채무관리관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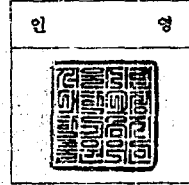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_____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경리관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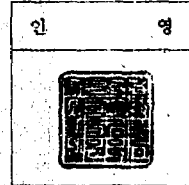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_____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지출원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직인등록조서

회계명: _____
 관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직명: 서울시립대학교 장학기금 출납원인
 사용개시일: 1990년 4월 일



사업소고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1990. 4. 6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0. 3. 5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86-5번지전(한강)	하 천	여의도 : 56㎡ 감실 : 16,592㎡ (사무실28㎡×2개소포함)	불법주차 전인차량 보 관 소	90.3.6- 91.3.5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사 령							
◎1990년 4월 6일자 3급 공무원 교육과전 해제 령 제118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강 정 환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전 근무를 해제함. 지방자치 및 가로정비 추진반장 근무를 명함.	내 무 국	지 방 부 이 사 관				
◎1990년 4월 10일자 생활지도사 전입 령 제119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임 수 영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경 기도 평택군 농 촌 지 도 소	생 활 지 도 사				
인사발령통지 령 제120호							
서울특별시 가정복지 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김 예 랑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90. 4. 3 대 통 령			
청소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90. 4. 10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감사관(조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 형 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90. 4. 3 대 통 령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조사담당관 조사2계장에 보함.				90. 4. 10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장							

(별지 제 2 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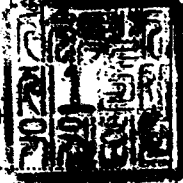
인 적 사 항	성 명	권 태 근 (權泰根)	소 속	서울시립대학교
			직 명	지방행정주사보
본 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동 16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공무원아파트 1510동 1101호			
출 석 이 유	성문 및 진술			
출 석 인 시	1990 년 4 월 26 일 14 시 00 분			
출 석 장 소	서울특별시 기록상합실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동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 년 4 월 3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격					
	주 소					

198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8 년 월 일

성 명

㉑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